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

[시행 2025. 4. 30.] [대통령령 제35489호, 2025. 4. 30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자동차정책과 - 교환·환불) 044-201-3919, 3837 국토교통부 (자율주행정책과 - 자율주행자동차) 044-201-3848, 3849 국토교통부 (자동차정책과 - 리콜) 044-201-3843, 4999 국토교통부 (자동차정책과 - 자동차 안전기준) 044-201-3850, 3853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등록업무) 044-201-3860, 3861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매매, 경매 등) 044-201-3856, 3857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검사, 정비) 044-201-3858, 3859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안증, 튜닝) 044-201-3840, 3841

제1조(목적) 이 영은「자동차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9. 25.>

제2조(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)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 9. 25., 2010. 2. 5., 2011. 11. 25.>

- 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
- 2.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농업기계
- 3. 「군수품관리법」에 따른 차량
- 4.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
- 5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

제3조(자동차의 차령기산일)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 <개정 2001. 3. 17.>

- 1.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: 최초의 신규등록일
- 2.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: 제작연도의 말일

제4조(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)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"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- 2.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- 3.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
- 4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8. 10. 23.>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제5조 삭제 <2016. 2. 3.>

제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개월(자동차가 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)을 말한다. <신설 2020. 2. 25.>

②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(이하 "방치자동차"라 한다)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, 발견장소, 방치기간,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 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9. 3. 27., 2018. 10. 23., 2020. 2. 25.>

- 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20. 2. 25.>
- ④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1999. 7. 29., 2001. 3. 17., 2020. 2. 25.>
- 1.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
- 2.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
- 3. 방치자동차의 소유자·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
- ⑤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.<개정 1999. 7. 29,, 2020. 2. 25.>
- 1.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(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 된 자동차로 본다)
- 2.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
- 3. 구조・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・파손되어 정비・수리가 곤란한 자동차
- 4.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
- ⑥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・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9. 3. 27., 2011. 11. 25., 2020. 2. 25.>
- ⑦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16. 1. 6., 2020. 2. 25.>
- 제7조(임시운행의 허가 등) ①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7. 29., 2001. 6. 29., 2002. 12. 31., 2006. 5. 30., 2008. 9. 25., 2009. 3. 27., 2010. 2. 5., 2013. 3. 23., 2015. 5. 1., 2021. 2. 2., 2021. 10. 14., 2025. 2. 7.>
 - 1.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・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 - 2.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·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
 - 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 - 4.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 - 5. 삭제 < 2002. 12. 31.>
 - 6. 삭제 < 2002. 12. 31.>
 - 7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 - 8. 자동차를 제작·조립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·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·전시(展示)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
 - 9. 자동차를 제작・조립・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
 - 10. 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 - 11.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
- 나.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(이하 "성능시험대행자"라 한다)
- 다.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
- 라.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
- 마.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(이하 "전기자동차"라 한다) 등 친환경・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・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- 12.「도로교통법」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
- 13. 자동차를 제작・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(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)를 운행하려는 경우
-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개정 1998. 12. 31., 2001. 6. 29., 2002. 12. 31., 2010. 2. 5., 2015. 5. 1., 2021. 10. 14.>
- 1. 제1항제1호・제3호・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일 이내
- 1의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20일 이내
- 2. 제1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: 40일 이내
- 3. 삭제 < 2002. 12. 31.>
- 4.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2년(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)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・연구에 소요되는 기간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5. 4. 30.>
- 1. 정치・외교・문화・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: 6개월 이내
- 2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,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,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·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: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·승인에 소요되는 기간
-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・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험・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.<신설 2016. 1. 6., 2024. 12. 17.>
- ⑤시·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2. 5., 2016. 1. 6.>

[제목개정 2010. 2. 5.]

제8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길이ㆍ너비 및 높이
- 2. 최저지상고
- 3. 총중량
- 4. 중량분포
- 5. 최대안전경사각도
- 6. 최소회전반경
- 7.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
-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10. 13., 2024. 1. 9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원동기(동력발생장치) 및 동력전달장치
- 2. 주행장치
- 3. 조종장치
- 4. 조향장치
- 5. 제동장치
- 6. 완충장치
- 7. 연료장치 및 전기・전자장치
- 8. 차체 및 차대
- 9.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
- 10.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
- 11. 창유리
- 12. 소음방지장치
- 13.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
- 14. 전조등, 번호등, 후미등, 제동등, 차폭등,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
- 15.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
- 16.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
- 17. 후사경,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
- 17의2.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
- 18. 속도계,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
- 19.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
- 20.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
- 21.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

제8조의2(자동차부품) 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·장치 또는 보호장구"(이하 "자동차부품"이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0. 13., 2025. 2. 7.>

- 1. 브레이크호스
- 2. 좌석안전띠
- 3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
- 4. 후부반사기
- 5. 후부안전판
- 6. 창유리
- 7. 안전삼각대
- 8. 후부반사판
- 9. 후부반사지
- 10. 브레이크라이닝
- 11. 휠
- 12. 반사띠
- 13.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
- 14.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제8조의3(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)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(이하 "자동차제작자등"이라 한다)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(이하 "부품제작자등"이라 한다)가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 <개정 2024. 7. 30.>

- 1.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 - 가.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
 - 나.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
- 2.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 - 가.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
 - 나.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,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2. 2.]

제8조의4(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)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"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[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<2025. 2. 7.>]

- **제8조의5(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**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
 - 2.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
 - 3. 소방청이 보유한 「소방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(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)
 - 4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・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
 - 5. 환경부가 보유한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,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 시정에 관한 계획,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
 - 6.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
 -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 자 또는 운전자(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)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2. 2.]

[제8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<2025. 2. 7.>]

- 제8조의6(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(이하 "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2. 2.]

[제8조의5에서 이동 <2025. 2. 7.>]

- 제9조(내압용기검사의 생략)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(이하 "내압용기검사"라 한다)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
- 나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자동차제작자·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
- 다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
-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
 - 가.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
 - 나. 자동차정비업자(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)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 안전장치를 교체·수리하는 내압용기(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)
-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
 - 가.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
 - 나. 주한(駐韓)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
 - 다.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
 - 라.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제9조의2(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 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(이하 "자동차검사대행자"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(이하 "내압용기재검사"라 한다)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
- 2.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
- 3.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
- 4.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-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1. 사업추진계획서
- 2. 소요비용 산정내역
- 3. 자금집행계획
- 4.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제9조의3(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)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"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.

- 1.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
- 2.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
-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"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.
- 1.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
- 2.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- 제9조의4(손실보상)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(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)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,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제9조의5(제세공과금)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"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"이란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- 제9조의6(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2. 12. 9.>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- 제9조의7(위원회의 심의대상)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 2. 2.>
 - 1.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 한 사항
 - 2.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- 제9조의8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.
 -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 -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2, 12, 9.]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[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9조의9(소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.
 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9.]

[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1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**제9조의10(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)**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"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8, 10, 23,]

[제9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2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**제9조의11(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)**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.
 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2.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3.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・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
 - 4. 개별 교환・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
 - 5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[본조신설 2021. 2. 2.]

[제9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3으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9조의12(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)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9.>
 -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2. 2.]

[제9조의10에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9조의13(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「한국교통 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21. 2. 2.>
 - 1.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・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 - 3.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(이하 "사무국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.
-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[제9조의11에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10조(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·관리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7. 29., 2015. 4, 29.>
 -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신설 2015. 4. 29.>
 - 1. 이륜자동차대장: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
 - 2.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: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(사용신고의 경우 5년)

[제목개정 2015. 4. 29.]

제10조의2(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)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"전기자동차"는 각각 "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(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"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**제11조(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)**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"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. <개정 2010. 2. 5., 2011. 11. 25.>
 - 1. 임원(대표자를 포함한다)의 주소변경
 - 2.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·개축(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- **제12조(자동차정비업의 세분)**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 <개정 2013. 6. 17., 2015. 12. 10.>
 - 1. 자동차종합정비업
 - 2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
 - 3. 자동차전문정비업
 - 4. 원동기전문정비업
 -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6. 17.>
- 제13조(사업의 개선명령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7. 29., 2018. 10. 23.>
 - 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7. 12. 31., 2018. 10. 23.>
 - ③ 삭제<1999. 7. 29.>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삭제<1999. 7. 29.>
- 제13조의2(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)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·광고"란다음 각 호의 표시·광고를 말한다.
 - 1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・광고
 - 2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・광고
 - 3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·축소하는 표시·광고

[본조신설 2022. 12. 9.]

[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13조의3(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)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(이하 "자동차매매업자 "라 한다)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(이하 이 조에서 "공제"라 한다)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26.>
 - 1. 법인인 경우: 2천만원 이상
 - 2. 법인이 아닌 경우: 1천만원 이상
 -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(이하 이 조에서 "보증"이라 한다)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26.>
 -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로 한정한다)·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,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9. 26.>
 -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9. 26.>

[본조신설 2009. 3. 27.]

[제1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13조의4(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 보험 등)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「보험업법」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(이하 "자동차성 능・상태점검책임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해야 한다. <개정 2023. 6. 9.>
 - ②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, 사고·교환·수리 등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할 것
 - 2.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·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,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
 - ③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이하 이 조에서 "보험회사"라 한다)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 -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「보험업법」제176조에 따른 보험요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율 산출기관(이하 "보험요율 산출기관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한국교통안전공단: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
- 2. 보험요율 산출기관: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[제13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<2022. 12. 9.>]

제13조의5(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교육 등)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23.>

- 1. 자동차가격 조사・산정 방법
- 2. 자동차가격 조사 · 산정 관련 법령
- 3. 자동차가격 조사・산정 실무
- 4. 직무윤리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, 10, 23,>
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
- 2. 한국교통안전공단
- 3. 「기술사법」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
-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10.]

[제13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<2022. 12. 9.>]

제13조의6(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)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- 1. 호스트서버의 용량: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
- 2.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: 1년 이상일 것
- 3. 이용약관: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
- 4.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: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(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
-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
- 2. 상호 및 서비스 명칭
- 3. 인터넷 홈페이지
- 4.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
- 5.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(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)

[본조신설 2018. 10. 23.]

[제13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<2022. 12. 9.>]

제13조의7(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)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국제조화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- 2.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
- 4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[제13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13조의8(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(이하 이 조에서 "전담기관업무"라 한다)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
 - 2. 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
 - 3.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
 - 4. 전담기관의 조직・인력 및 시설・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
 -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전담기관의 조직・인력 및 시설・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
 - 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
 - 3. 사업추진계획서
 - 4.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 -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7. 13.]

[제13조의7에서 이동 <2022. 12. 9.>]

- 제13조의9(시범사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(이하 이 조에서 "시범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시범사업의 목표,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- 2.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
 - 3.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- 1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2.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,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
 - 3.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 -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
- 2.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
- 3. 자동차기술의 연구・개발 및 이용・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,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,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

[제13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1로 이동 <2018. 10. 23.>]

제13조의10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)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(이하 "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"라 한다)의 주요 시설의 규모,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
- 2.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- 4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5.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6.]

[제13조의8에서 이동 <2018. 10. 23.>]

제13조의11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23., 2019. 4. 2., 2020. 9. 10.>

- 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- 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- 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- 4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- 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- 6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
- 7.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
- 8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- 9. 한국교통안전공단
- 10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
- 11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6.]

[제13조의9에서 이동 <2018. 10. 23.>]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3조의12(공제조합의 설립 등)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(이하 "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,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정관
 - 2. 사업계획서
 - 3. 수입ㆍ지출 계산서
 - 4. 창립총회의 회의록
 -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・탈퇴에 관한 사항
 - 6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 - 7. 총회에 관한 사항
 - 8.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 - 9. 임직원에 관한 사항
 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11.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 -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사업
 -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5. 설립 인가 연월일
 - 6. 출자금의 총액
 - 7.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
 - 8.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
 - 9.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)
 - 10.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
 - 11. 대리인에 관한 사항
 - 12. 공고의 방법
 -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. 다만,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3(예산과 결산의 제출)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- 제13조의14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.
 - 1.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 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차입금에 관한 사항
 - 4.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
 - 5. 임원의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
 - 6. 공제약관・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・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7. 공제금, 공제 가입금, 분담금 및 그 요율(料率)에 관한 사항
 - 8.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 - 9.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
 - 1.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
 - 가. 금융・보험・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나.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다. 「보험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「소비자기본법」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라.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마.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3. 총회가 조합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
 - 4.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
 -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-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5(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)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(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)"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6(보증의 종류)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"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.

- 1. 이행보증
- 2. 지급보증
- 3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7(보증규정 및 공제규정)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보증사업의 범위
- 2. 보증계약의 내용
- 3. 보증수수료
- 4.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-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공제사업의 범위
- 2. 공제계약의 내용
- 3. 공제료 및 공제금
- 4.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8(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)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제13조의19(재무건전성 기준)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

- A: 지급여력금액(자본금, 대손충당금,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'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)
- B: 지급여력기준금액(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)
- 2.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
- 3.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
- 4.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- 1.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
- 2.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9. 26.]

- 제14조(전산자료의 이용)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, 자동 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.
 - 1.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
 - 2. 자료의 범위
 - 3. 자료의 제공방식·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
 - 2.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
 - 3.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
 -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,, 2013. 3. 23.>
 -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1. 제2항 각호의 사항
 - 2.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
 - 3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
 -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0. 2. 25.>
- 제14조의2(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, 등록, 검사,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(이하 "자동차이력관리 정보"라 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5. 8.>
 -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 7. 11.>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5. 10. 6.]

[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<2015. 10. 6.>]

- **제14조의3(제공 가능 정보)**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5. 8., 2023. 6. 9.>
 - 1.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
 - 가.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
 - 나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
 - 다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
 - 라. 정비이력 정보(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)
 - 마.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정보(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)
 - 바. 폐차 정보(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)
 - 사.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2.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
 - 가. 자동차등록번호, 차명, 차종, 용도,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
 - 나.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
 - 다.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
 - 라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
 - 마.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
 - 바. 자동차 정비 횟수
 - 사. 중고자동차 성능・상태 점검 횟수
 - 아. 폐차 여부

[본조신설 2015. 10. 6.]

[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<2015. 10. 6.>]

- 제14조의4(개인정보 보호 조치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 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 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5. 8.>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.<개정 2020. 12. 8.>
 - 1.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 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
 - 2. 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[본조신설 2015. 10. 6.]
- **제14조의5(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)**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 -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,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(이하 "조합등"이라 한다)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

- 1.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- 2.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5. 26.]

[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<2020. 5. 26.>]

- 제14조의6(자동차 인터넷 표시·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
 - 3.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 - 4. 그 밖에 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9.]

[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<2023. 6. 9.>]

- **제14조의7(주행거리 변경 사유)**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"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 2. 5., 2011. 11. 25.>
 - 1.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(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
 - 2. 침수·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(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
 - 가.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
 - 나.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

[본조신설 2007. 7. 19.]

[제14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8로 이동 <2023. 6. 9.>]

-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, 자동차검사대행자,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(이하 "종합검사대행자"라 한다),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(이하 "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"라 한다), 성능시험대행자,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23., 2021. 2. 2., 2022. 2. 17., 2023. 6. 9., 2023. 9. 26., 2025. 2. 7., 2025. 3. 14.>
 - 1.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,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(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)의 부착에 관한 사무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
- 11.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
- 12.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
- 13.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
- 14.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
- 15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·시험·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
- 16.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
- 17.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
- 18.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
- 19.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(이하 "검사기술인력"이라 한다)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
- 20.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환불중재에 관한 사무
- 21.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
- 21의2.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
- 22.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
- 23.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
- 24.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・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
- 25.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
- 26.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
- 27.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
- 28.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
 - 가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
 - 나.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
 - 다.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
 - 라.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
- 28의2.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・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
- 29.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
- 30.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
- 31.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
- 32.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
-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23. 9. 26.>

[전문개정 2017. 3. 27.]

[제14조의7에서 이동 <2023. 6. 9.>]

제15조(과징금의 부과·징수) ①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(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 <개정 1999.

- 7. 29., 2002. 12. 31., 2007. 12. 31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2. 2.>
-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3. 12. 12.>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 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<개정 2016. 6. 28., 2021. 7. 13.>
-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.<개정 2016. 6. 28., 2021. 2. 2., 2021. 7. 13.>
- ⑥ 삭제<2021. 9. 24.>

제16조 삭제 <1997. 12. 31.>

- 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97. 12. 20., 1997. 12. 31., 1998. 12. 31., 1999. 7. 29., 2002. 12. 31., 2008. 2. 29., 2009. 3. 27., 2010. 2. 5., 2011. 11. 25., 2013. 3. 23., 2016. 2. 3., 2018. 6. 19., 2021. 2. 2., 2021. 10. 14., 2022. 3. 8., 2025. 3. 14.>
 - 1.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
 - 1의2.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(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)
 - 2.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[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(이하 "지정정비사업자"라 한다)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]
 - 3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,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,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·폐업신고의 처리
 - 4. 삭제 < 2025. 3. 14.>
 - 4의2.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(이하 "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"라 한다)의 지정,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,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
 - 4의3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· 업무정지명령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 · 관리
 - 5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·직무정지명 령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
 - 6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,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 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
 - 7.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중 제6호에 따른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
 - 7의2.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,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,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
 - 7의3.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・업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・관리
 - 7의4.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·직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
 - 8.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(2이상의 시·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
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의2.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
- 9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,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)
- 10.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(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)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<신설 2009. 3. 27, 2013. 3. 23, 2025. 3. 14.>
- 1.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(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 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)
- 2.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(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)
- ③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1999. 7. 29., 2009. 3. 27., 2010. 2. 5., 2011. 11. 25., 2016. 1. 6., 2025. 2. 7.>
- 1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·관리,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,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·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
- 2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(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)
- 3.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(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4.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
- 5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
- 6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
- 7. 법 제13조 (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 납·영치 및 폐기
- 8.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
- 9.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
- 10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
- 1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
- 12. 삭제 <1999. 7. 29.>
- 1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
- 14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
- 15. 삭제 <1999. 7. 29.>
- 16. 삭제 < 1999. 7. 29.>
- 17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
- 18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
- 19. 삭제<1999. 7. 29.>
- 20. 삭제<1999. 7. 29.>
- 21. 삭제 <1999. 7. 29.>
- 22. 삭제 < 1999. 7. 29.>
- 23. 삭제 < 1999. 7. 29.>
- 24. 삭제 < 2011. 11. 25.>
- 25. 삭제 <1999. 7. 29.>
- 26. 삭제 <1999. 7. 29.>

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7. 삭제 <1999. 7. 29.>
- 28. 삭제 < 1999. 7. 29.>
- 29. 삭제 <1999. 7. 29.>
- 30. 삭제 < 1999. 7. 29.>
- 31. 삭제 < 1999. 7. 29.>
- 32. 삭제 <1999. 7. 29.>
- 33.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(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)
- 34.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(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 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)
- 35.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법 제72조제1항・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・도지사의 명령・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)
- ④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09. 3. 27., 2013. 3. 23.>
- 제18조(권한의 재위임) ①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·인원·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고려하여야 하며,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,, 2011. 11. 25,, 2013. 3. 23.>
 -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.<개정 2020. 2. 25.>
 - ③ 삭제<1999. 7. 29.>
- 제19조(업무의 위탁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3조제2항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 <개정 1997. 12. 20., 2002.
 - 12. 31., 2008. 2. 29., 2010. 2. 5., 2013. 3. 23., 2015. 12. 10., 2018. 10. 23., 2025. 3. 14.>
 - ② 삭제<2002. 12. 31.>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<개정 2015. 10. 6, 2018. 10. 23, 2020. 9. 22, 2025. 3. 14.>
 - 1.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30조의4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
 - 2의2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
 - 2의3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・보급 업무
 - 3. 법 제40조제1항(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계・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
 - 4.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
 - ④ 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(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, 제8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·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0. 6., 2018. 10. 23.>
 - 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<신설 2002. 12. 31., 2008. 9. 25., 2010. 2. 5., 2015. 10. 6., 2018. 10. 23., 2024. 1. 9.>
 - ⑥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.<개정 1997. 12. 20., 1999. 7. 29.,

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

2002. 12. 31., 2010. 2. 5., 2015. 10. 6.>

- ⑦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.<개정 1999. 7. 29., 2002. 12. 31., 2010. 2. 5., 2015. 10. 6.>
-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 12. 20., 1999. 7. 29., 2002. 12. 31., 2010. 2. 5., 2015. 10. 6.>
-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<신설 2008. 9. 25., 2013. 3. 23., 2015. 10. 6., 2018. 10. 23.>
-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28조에 따른 한국가 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<신설 2011. 11. 25., 2013. 3. 23., 2015. 10. 6.>
- 1.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
- 2.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
- 3.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.<신설 2021. 2. 2.>

[제목개정 2020. 9. 22.]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1. 11. 25., 2018. 4. 24., 2021. 2. 2.> [전문개정 2008. 9. 25.]

제21조(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)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.

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01. 6. 30.]

- 제22조(통고처분의 절차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 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·범칙금액·위반내용·적용법조·납부장소·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
 -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01. 6. 30.]

부칙 <제35489호,2025. 4. 30.>(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.
- 1. 정치・외교・문화・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: 6개월 이내

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,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,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 ·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: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·승인에 소요되는 기간